

# 한일 공동개발협정과 해양경계획정

제4차 RINSA 세미나

한반도 주변 해양질서 변화와 국제법적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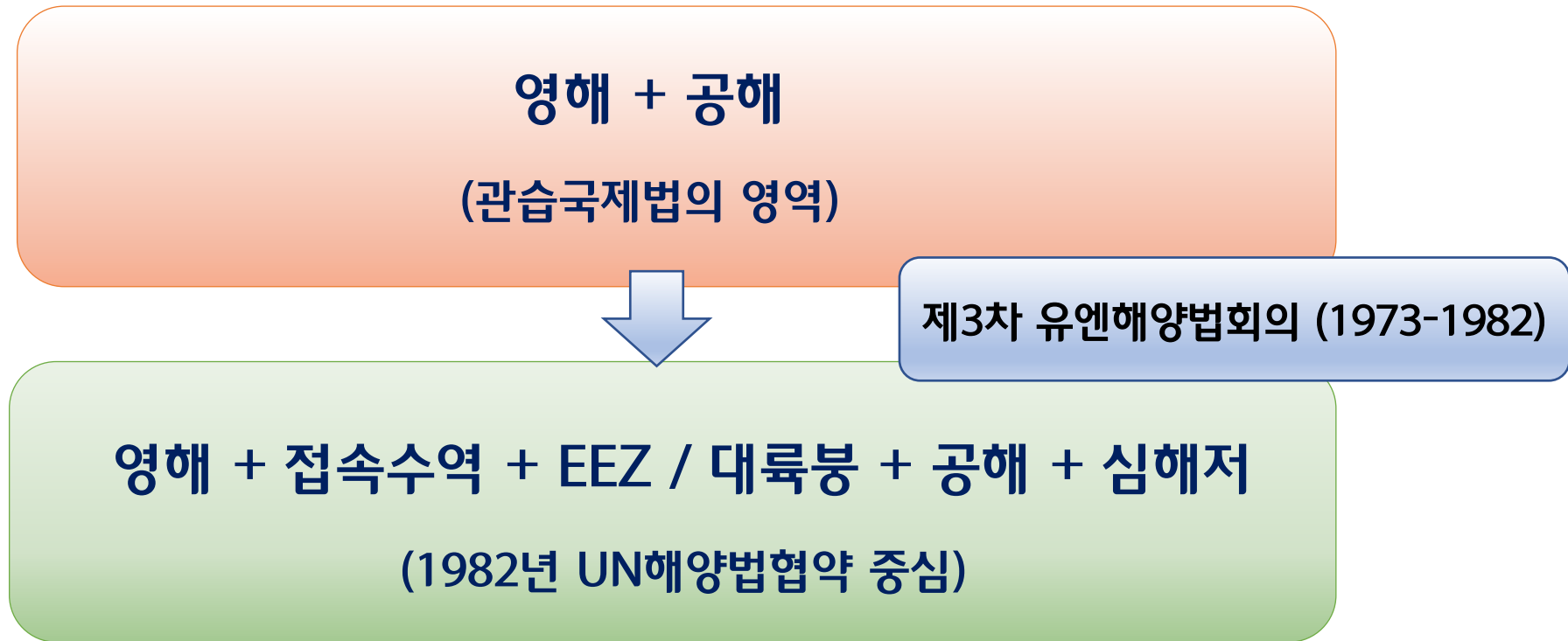
유민국제법연구소 / 김민철

2023. 4. 26.(수), 국방대 컨벤션센터 1세미나실/논산

- 동북아의 해양질서
-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 체결배경 및 현황
  - 일본의 소극적 태도의 원인
  -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입장차
- 협정 체제와 동중국해의 미래

\* 일러두기: 이 자료는 2023. 4. 26.(수) 국방대 안전보장문제연구소 주최 제4차 RINSA 세미나 발표자료로 작성된 것입니다. 발표의 토대가 된 상세내용은 김민철, “1985년 리비아-몰타 사건과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안보현안분석 제202호(2023. 4)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인용 필요 시 위 글을 출처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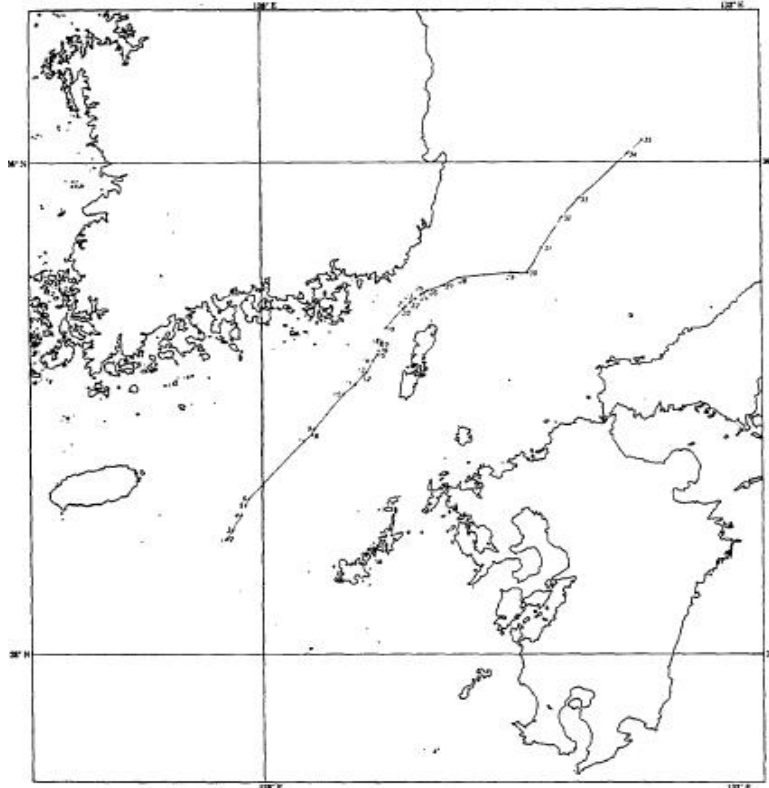
## 해역 개념의 변천



- \* **UN해양법협약**: 1982. 4. 30. 뉴욕회의에서 조약문 채택 / 1982. 12. 10. 몬테고베이에서 서명 개방
  - 1993. 11. 16. 가이아나의 60번째 비준서 기탁에 따라 1994. 11. 16. 원조약 발효
  - **한중일** 등 북아 3국은 1996년 각기 비준서를 기탁하여 같은 해 협약 발효

## 동북아의 해양질서

기획정수역: 1974년 한일 북부대륙붕경계협정을  
통해 일부 대륙붕에 대해 경계획정



한일 북부대륙붕경계 수역도 (DOALOS)

여타 수역 : 1996년 이래 경계획정 협상 진행 중

- (한중) 1996년 이래 국장급 회담 개최, 2015년 차관급으로 격상하여 국장급 실무회담과 병행하여 꾸준히 진행 중
- (한일) 1996년 이래 국장급 회담 개최, 2010년 이후 회담 미개최
- 경계획정에 관한 입장 대립이 첨예하여 조기 타결 난망

#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

## ① 7광구 ≠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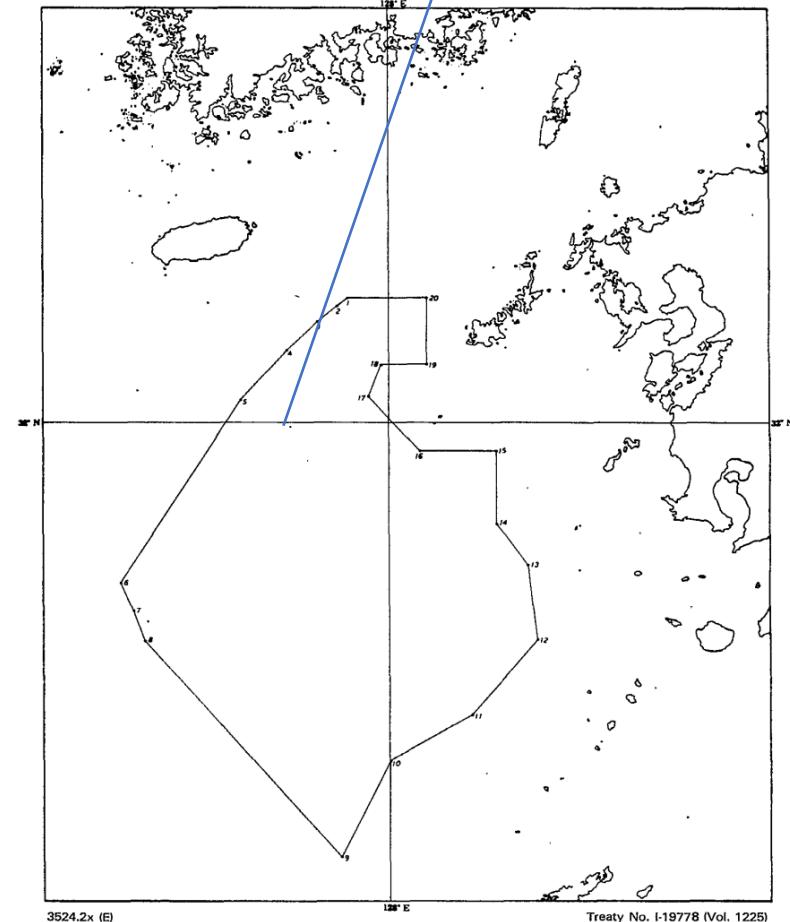
7광구: 국내법상 광구 개념



국무회의의 안건철 (1970)

Joint Development Zone (JDZ)

공동개발구역: 국제조약상 구역 개념



협정 첨부 수역도(DOALOS - Marine Space)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별표

(1970. 5. 30. 제정 및 시행)

#### 제 7 해저광구

1. 북위 32° 57' 과 동경 127° 43' 의 교점
2. 북위 31° 56' 과 동경 127° 07' 의 교점
3. 북위 30° 31' 과 동경 126° 43' 의 교점
4. 북위 30° 31' 과 동경 125° 54' 의 교점
5. 북위 28° 36' 과 동경 127° 38' 의 교점
6. 북위 29° 19' 과 동경 128° 00' 의 교점
7. 북위 29° 43' 과 동경 128° 88' 의 교점
8. 북위 30° 19' 과 동경 129° 09' 의 교점
9. 북위 30° 54' 과 동경 129° 04' 의 교점
10. 북위 31° 13' 과 동경 128° 50' 의 교점
11. 북위 31° 47' 과 동경 128° 50' 의 교점
12. 북위 31° 47' 과 동경 128° 14' 의 교점
13. 북위 32° 12' 과 동경 127° 50' 의 교점
14. 북위 32° 27' 과 동경 127° 56' 의 교점
15. 북위 32° 27' 과 동경 128° 18' 의 교점
16. 북위 32° 57' 과 동경 128° 18' 의 교점

588

국무회의 안건철 (1970)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제2조

-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 제2점 북위 32·53.4' 동경 127·36.3'
- 제3점 북위 32·46.2' 동경 127·27.8'
- 제4점 북위 32·33.6' 동경 127·13.1'
- 제5점 북위 32·10.5' 동경 126·51.5'
- 제6점 북위 30·46.2' 동경 125·55.5'
- 제7점 북위 30·33.3' 동경 126·00.8'
- 제8점 북위 30·18.2' 동경 126·05.5'
- 제9점 북위 28·36.0' 동경 127·38.0'
- 제10점 북위 29·19.0' 동경 128·00.0'
- 제11점 북위 29·43.0' 동경 128·38.0'
- 제12점 북위 30·19.0' 동경 129·09.0'
- 제13점 북위 30·54.0' 동경 129·04.0'
- 제14점 북위 31·13.0' 동경 128·50.0'
- 제15점 북위 31·47.0' 동경 128·50.0'
- 제16점 북위 31·47.0' 동경 128·14.0'
- 제17점 북위 32·12.0' 동경 127·50.0'
- 제18점 북위 32·27.0' 동경 127·56.0'
- 제19점 북위 32·27.0' 동경 128·18.0'
- 제20점 북위 32·57.0' 동경 128·18.0'
- 제1점 북위 32·57.0' 동경 127·41.1'

3524.2x 0

. 1225)

협정 첨부 수역도(DOALOS - Marine Space)

## ② 2028년 6월이면 협정은 만료?

### 한일 공동개발협정 제31조

2. 본 협정은 5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후 본조 제3항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3.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3년 전 서면 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시에 혹은 그 후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 협정 체결: 1974년 1월 30일 / 발효 : 1978년 6월 22일

⇒ 2025년 6월 22일 이후부터 일방의 종료통고 가능

① 2025년 6월 22일 종료통고 → 2028년 6월 22일 종료

② 어느 측도 종료 통고하지 않으면 계속 유효 (별도 양국이 연장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됨)

## ③ 협정이 종료되면 동중국해 대륙붕은 일본에 귀속?

⇒ 대상해역은 경계획정의 대상이 되며,

경계획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한 일방에 자동 귀속되는 건 아님

#### ④ 대륙붕 영유권?

**대륙붕** : 영해 이원의 광물자원, 그 밖의 무생물자원, 정착성어종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적 권리가

인정되는 해저 및 하층토 (200해리 또는 자연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끝)

⇒ 대륙붕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가 아니므로 영유권 표현은 오해의 소지

#### · UN해양법협약 제76조 (대륙붕의 정의)

1.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대륙변계의 바깥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않는 경우,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하층토** [...]

2.~10.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바깥한계 설정 규정 (+ 제2부속서: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 · UN해양법협약 제77조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1. 연안국은 **대륙붕을 탐사하고 그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대륙붕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

4. 이 부에서 규정한 **천연자원은 해저와 하층토의 광물, 그 밖의 무생물자원 및 정착성 어종** [...]

(참고) EEZ : 200해리까지 대륙붕과 중복된 권리 인정

- UN해양법협약 제56조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

1. EEZ에서 연안국의 권리

(a) 주권적 권리 (sovereign rights)

-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
- 해수·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과 같은 이 수역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b) 관할권 (jurisdiction)

- (i)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ii) 해양과학조사, (iii)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3. 해저와 하층토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된 권리는 제6부(대륙붕)에 따라 행사된다.

- UN해양법협약 제56조 (EEZ의 폭) :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다

## 대륙붕 규범의 변천과 협정의 체결배경

1958년 대륙붕협약 (※ 대륙붕에 관한 최초의 다자규범)

- 대륙붕의 정의(제1조) : 수심 200m + 개발가능성 기준
- 경계획정 원칙(제6조) : 등거리 원칙(등거리선/중간선)

\* 등거리/특별사정 규칙(equidistance/special circumstances rule)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ICJ)\*

- 대륙붕의 정의 : 육지영토의 자연연장(natural prolongation of the land territory/para. 19)
- 경계획정 원칙 : 형평의 원칙(equitable principles/paras. 85, 101)

\* 형평의 원칙/관련사정 규칙(equitable principles/relevant circumstances rule) : 관련사정 중 지질학적 요소 포함(para. 95)

1982년 UN해양법협약

- 대륙붕의 정의(제76조): (1) 자연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끝 (자연연장 기준/북해대륙붕 사건의 영향)  
(2) 200해리 (거리 기준/200해리 EEZ 제도의 영향)
- 경계획정 원칙(제83조①): 공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해 국제법에 의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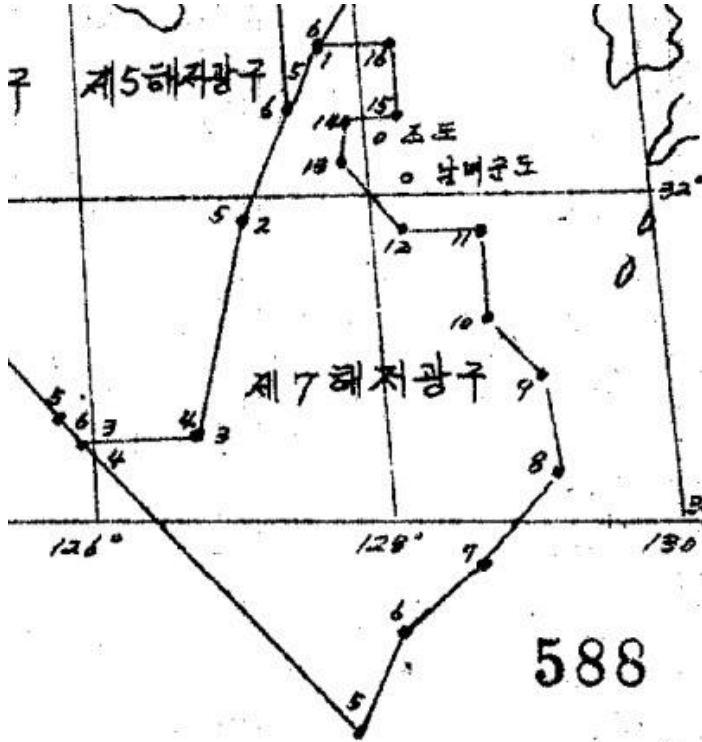
## 7광구 설정과 공동개발협정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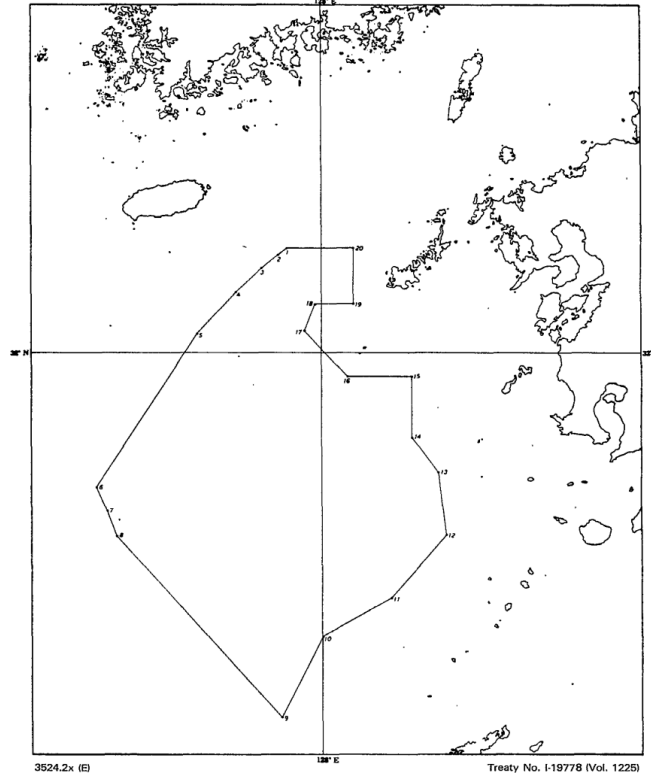
국무회의 안건철 (1970)

-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정/시행  
: 당초 1-6광구만 설정할 예정,  
북해대륙붕 사건을 계기로 7광구 추가
- 중간선 입장에 있던 일본의 반발로  
한일 간 협상 진행
- 1974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체결  
- 북부대륙붕경계협정도 함께 체결
- 일본의 국내비준 절차 지연에 따라  
4년 후인 1978년 발효

Q. 7광구와 JDZ의 북서면 경계는 왜 다른가? : 중간선에 대한 견해차와 기점 문제\*



국무회의 안건철 (1970)



협정 첨부 수역도  
(DOALOS - Marine Space)

• 공동개발구역(JDZ)의 북서면 경계

: 제주도과 단조군도(男女群島)-토리시마(鳥島)  
간 중간선 반영 (일측 주장 중간선)

☞ 단조군도와 토리시마 기점론의 무력화는 가능한가?

\* 토리시마(일명 히젠토리시마, 肥前鳥島)

: 북암, 중암, 남암의 세 개의 암석으로 구성  
(각 19 m<sup>2</sup>, 80 m<sup>2</sup>, 88 m<sup>2</sup>)

\* 단조군도(男女群島)

: 토리시마로부터 남동 35km 지점에 위치(4.75km<sup>2</sup>)

• 독도(0.18km<sup>2</sup>) 기점론과의 연계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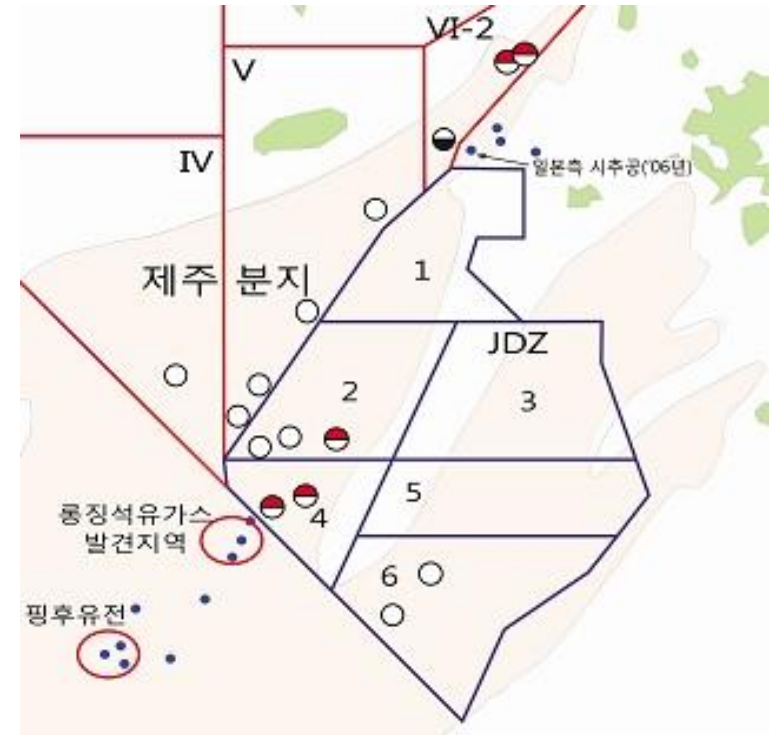
• 한일어업협정상 제주남부 중간수역의 설정 배경

## 협정의 이행현황

- 1978년 협정 발효 직후 공동탐사 → 1993년 양측 조광권자의 조광권 반납 후

### 협정에 따른 공동탐사/개발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 시기별 현황 : ① 1979년-1987년 1차 탐사 (7개공 시굴, 3개공 가스등 징후)  
② 1991년-1993년 2차 탐사 (기존 데이터의 해석작업)  
③ 2001년-2004년 3D 탄성파 탐사 (양국 정부 간 별도 MOU 통해 실시)  
④ 2006년-2010년 민간 단계 공동연구 사업 진행 (민간 차원의 협력)
- 2009년 한국 정부는 1소구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  
일측의 조광권자 지정 없이 위 조광권은 2017년 6월 30일로 종료
- 2020년초 한국 정부는 2소구/4소구에 대해 한국석유공사를 조광권자로 지정하고  
일본 정부에 조광권자 지정 요구
-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구인 한일 공동위원회는 1980년대 중반 이래 未 개최
  - \* 협정 제24조 ①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수단으로 한일 공동위원회를 설치 하고 유지한다. [...] ⑤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회합하며 [...].
  - \* 협정 제29조 :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대륙붕 광구현황 및 시추실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2014. 9.) 중)

## 협정의 이행구조

• (구조) 양국의 조광권자 지정 → 각 조광권자 간 운영계약 체결 → 운영계약에 대한 양국의 승인

→ 운영계약의 효력발생 → 조광권자에 대한 탐사개발권 인정

\* 협정 제4조 ① 각 당사국(each Party)은 [...] 각 소구역에 관하여 [...] 조광권을 부여해야 한다(shall authorize).

⇒ **한일 양국의 조광권자 지정이 없으면 공동탐사개발이 불가능한 구조**

• (단독탐사·개발) 일방 조광권자의 조광권 포기, 취소 등 예외적 상황(협정 제15조)을 제외하고

일방 조광권자에 의한 단독탐사개발을 허용하는 규정은 부존재

⇒ **협정의 존재가 사실상 일방의 단독탐사·개발마저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

(Q) 협정상 단독탐사개발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일본의 조광권자 미지정으로 공동탐사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독탐사개발의 실시는 협정 위반인가? (\* 조약법협약상 시행정지 안 등 제기)

## 대륙붕규범의 변천 맥락에서 본 일본의 소극적 태도의 원인

1969년 북해대륙붕 사건(ICJ) :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 형평의 원칙 (지질학적 요소 고려 가능)

1982년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ICJ) : 육지영토의 자연연장 ≠ 형평한 경계획정

단, 적절한 경우 자연연장의 확인은 형평한 경계획정에 중요한 역할 가능(para. 40)

1982년 UN해양법협약\*

① 200해리 EEZ 제도의 도입(제56, 57조) : 해저·하층토에서의 천연자원 탐사·개발의 권리를 중첩적 보호

② 대륙붕의 정의(제76조): (1) 자연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끝 (자연연장 기준/북해대륙붕 사건의 영향)

(2) 200해리 (거리 기준/200해리 EEZ 제도의 영향)

\* ①, ② ⇒ 200해리 내 자연연장론의 의미 퇴색

③ 경계획정 원칙(제74조①/제83조①): 공평한 해결(equitable solution)에 이르기 위해 국제법에 의한 합의

\* 제3차 해양법회의의 당시 등거리 원칙 그룹과 형평의 원칙 그룹 간 첨예한 대립 속에 모호한 규정 마련

##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ICJ)\*

: 협약 발효 전 사건이나 200해리 EEZ 제도를 관습국제법으로 인정함으로써

비교적 협약 체제에 가까운 관습국제법을 대륙붕 경계획정에 적용한 사건

(1) 200해리 EEZ 제도를 관습국제법으로 인정 (para. 34)

(2) 대륙붕의 정의 : 200해리 내 '거리' 기준만이 권원 확인에 역할

+ 400해리 미만 수역 내 지형물은 근본적 단절에 불해당 (para. 39)

→ 400해리 미만 수역 내 200해리 이원의 자연연장 대륙붕 부정

(3) 경계획정 : 권원 확인에 역할 못하는 지질·지형요소는 경계획정에 역할 불가

+ 연안 200해리 내 지질·지형 요소 고려 불요(para. 40)

→ 400해리 미만 수역 내 경계획정 시 해저지형 불고려

(4) 거리기준/대향관계에서 중간선의 형평성 고려 **잠정중간선 작도 후 조정을 거쳐 최종경계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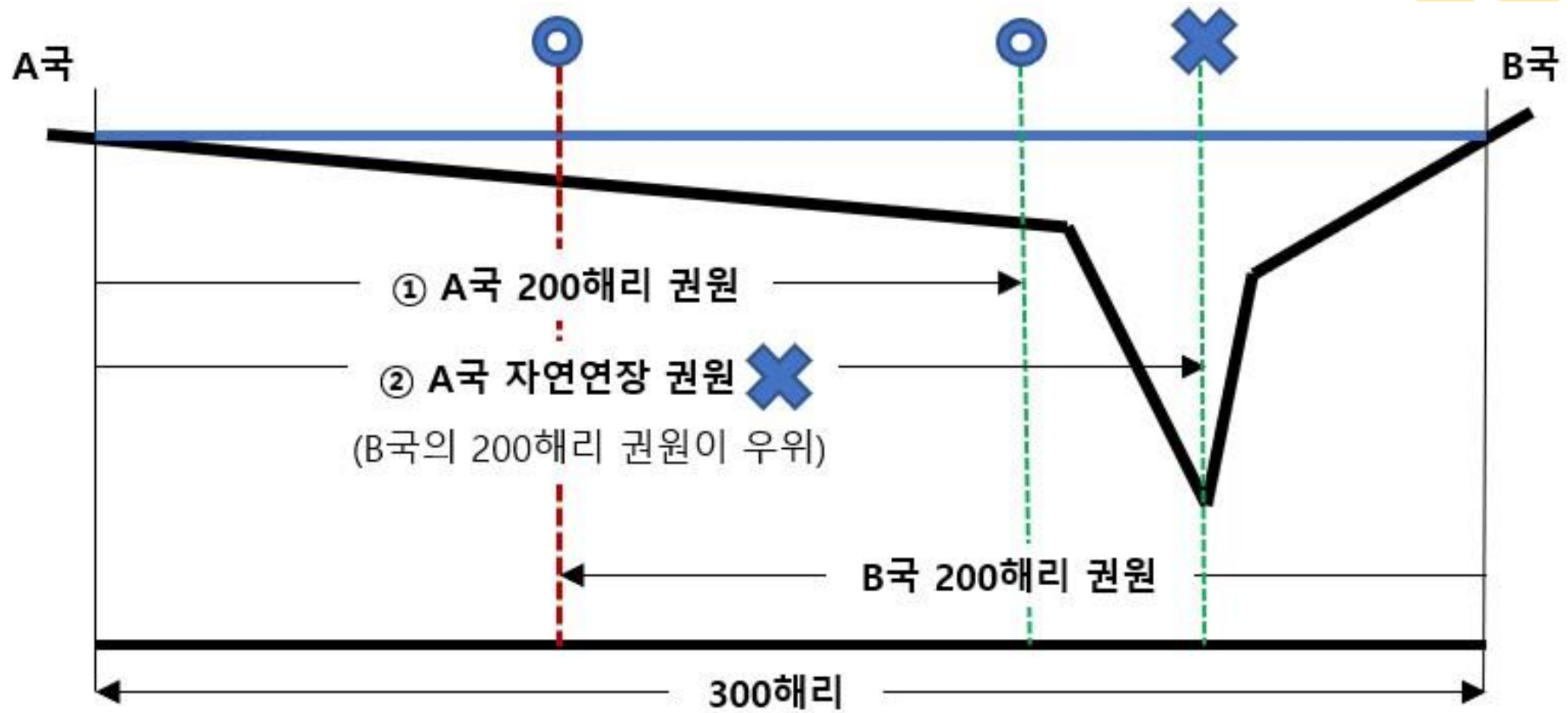
- 등거리 원칙에 기반한 2단계 접근법

→ 추후 판례에서 3단계 접근법 정착 (①잠정등거리선 작도, ②관련사정 고려 조정, ③ 불균형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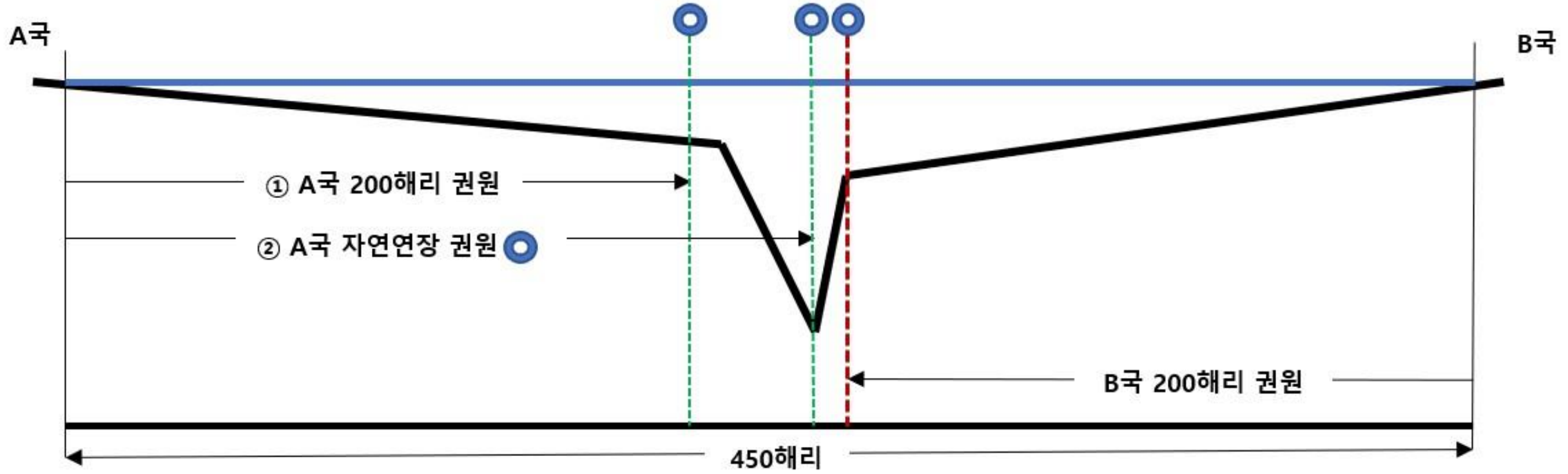
##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ICJ)\*

39. The Court however considers that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law enables a State to claim that the continental shelf appertaining to it extends up to as far as 200 miles from its coast, whatever the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rresponding sea-bed and subsoil, there is no reason to ascribe any role to geological or geophysical factors within that distance either in verifying the legal title of the States concerned or in proceeding to a delimitation as between their claims. This is especially clear **where verification of the validity of title is concerned, since, at least in so far as those areas are situated at a distance of under 200 miles from the coasts in question, title depends solely on the distance** from the coasts of the claimant States of any areas of sea-bed claimed by way of continental shelf, and the geological or geo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ose areas are completely immaterial. It follows that, **since the distance between the coasts of the Parties is less than 400 miles, so that no geophysical feature can lie more than 200 miles from each coast**,\* the feature referred to as the "rift zone" cannot constitute a fundamental discontinuity terminating the southward extension of the Maltese shelf and the northward extension of the Libyan as if it were some natural boundary.

\* A국의 200해리 이원의 자연연장 권원은 B국의 200해리 '이원에서만' 온전한 권원으로 작용 가능하다는 논리  
: B국의 200해리 내에서는 A국의 자연연장 권원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 가능



리비아-몰타 사건에 따른 400해리 미만 수역의  
대륙붕 권원 (김민철 작성)



리비아-몰타 사건에 따른 400해리 미만 수역의  
대륙붕 권원 (김민철 작성)

## 한일 간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한 입장차

### 1. 일본

(1) 대륙붕 권원 :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200해리 거리 기준에 따른 권원 우위

- 거리 기준 > 자연연장 기준(인정 불가), 따라서 자연연장에 따른 대륙붕한계 설정 불가
- 이른바 내측 대륙붕(inner continental shelf) 또는 거리 기준 우위론

(2) 경계획정 : EEZ/대륙붕 공히 '중간선' 규정 (single delimitation)

- 1996年 「排他的經濟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 第1·2條

### 2. 한국

(1) 대륙붕 권원 :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대륙붕 권원 간 우열 부존재

- 거리 기준과 자연연장 기준(인정)은 별개, 따라서 자연연장에 따른 대륙붕한계 설정 가능

(2) 경계획정 : 동중국해 대륙붕에 대해서는 형평의 원칙, EEZ는 중간선 원칙 추정 (dual delimitation)

- 통상적인 학계의 설명임. 입법상으로는 2017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참조

(참고) 韓,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2017)

- 한국은 2017년 기존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UN해양법협약상 대륙붕에 관한 일반규정을 추가하여 대륙붕에 관한 일반법으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을 마련
- 특히 제5조 제2항을 통해 한국의 EEZ/대륙붕의 경계획정 입장에 대한 추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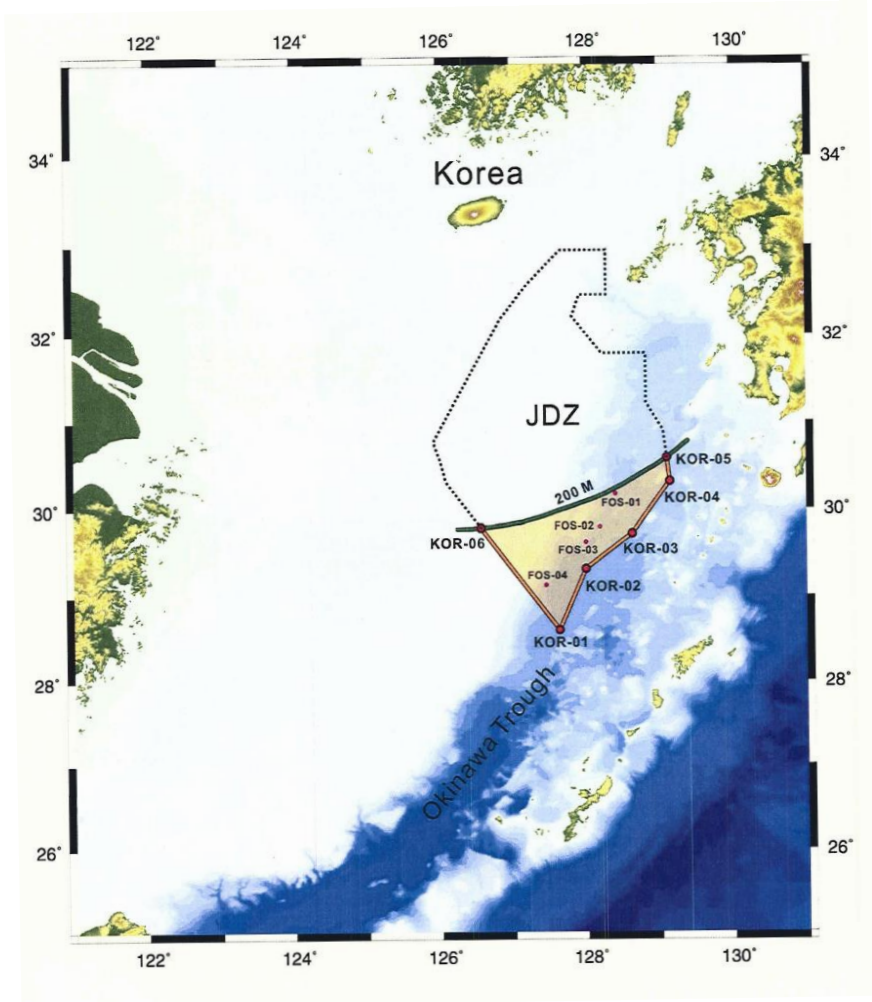
\* 제5조 (대한민국의 권리행사 등)

- ②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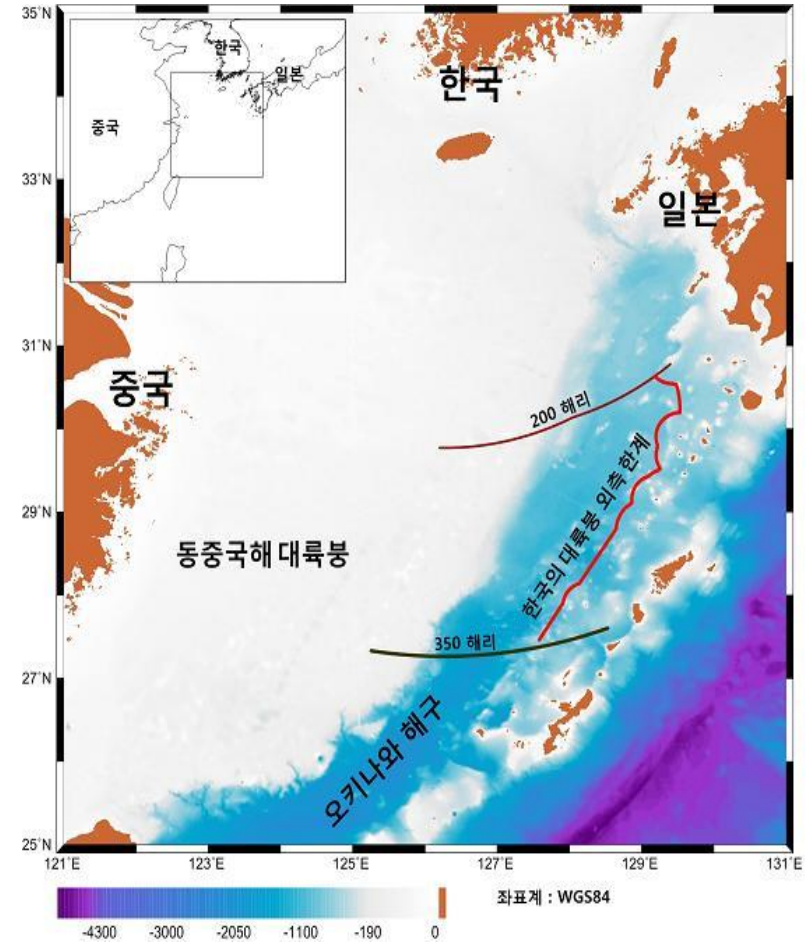
※ 특징 : (i) 한국은 경계획정의 원칙을 별도 국내입법 형태로 불표명 (일본, 중국과 상이점)

(ii) 2017년 개정 시 제5조 제2항 권리행사 제한 규정의 적용대상에 대한 국회논의 과정에서 당초 '대륙붕'도 포함시켰으나 동중국해 대륙붕 입장을 고려하여 최종 삭제

# 한국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주장 : CLCS 제출문서



韓, 2009년 예비정보 수역도 (DOALOS)



韓, 2012년 정식정보 수역도 (외교부 보도자료)

## 한국의 CLCS 앞 대륙붕한계문서에 대한 양국 간 논박

### 1. 일 본 (SC/13/019, 2013년 1월 11일 구상서)

- 한·일의 마주보는 해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다.

이 해역에서 대륙붕 경계획정은 협약 제83조에 따라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이 해역에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일방적으로 설정할 수 없다.

### 2. 한 국 (MUN/191/13, 2013년 1월 23일 반박구상서)

- UN해양법협약에는 400해리 미만의 대항국 간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바깥한계 설정을 금지하는 문언은 없다.

협약은 거리 기준과 지형학적 기준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에 우위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자국의 거리 기준에 따른 권원을 한국의 지형학적 기준에 따른 권원을 무효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 중국의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 주장과 일본의 입장

“동중국해에서 자원개발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적 입장(東シナ海における資源開発に関する我が国の法的立場)” (2015. 8. 3)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중일의 영해기선 간 거리는 400해리 미만이므로 쌍방의 200해리까지의 EEZ 및 대륙붕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합의에 의해 경계를 획정할 필요가 있다. 협약의 관련 규정 및 국제판례에 비춰 보면 중간선을 기초로 경계획정을 하는 것이 형평한 해결이 된다. [...] 1982년 협약의 관련 규정과 이후 국제판례에 따르면 마주보는 국가 간 거리가 400해리 미만인 수역에 경계획정에 있어서는 오키나와 해구와 같은 해저지형은 법적의미가 없다. 대륙붕을 오키나와 해구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 국제법에 비춰 보면 근거가 부족하다.

## 협정 체제와 동중국해의 미래 : 일본은 2025년 6월 협정을 종료 통고할 것인가?

\* 협정은 발효 후 50년 간 유효하며 3년 전부터 일방의 종료통고 가능, 단 종료통고 없으면 계속 존속

물론 협정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당사국 중 일방의 폐기통고가 없으면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일본의 반대로 유효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협정 종료가 될 것은 볼 수 없다. 더구나 협정 체결 후에 채택된 유엔 해양법협약에 거리 기준이 도입돼 기선에서 200해리까지는 무조건 연안국의 대륙붕으로 인정받아 오키나와 해구의 존재가 무의미하게 된다. 우리가 동해에서 독도를 한일 간 해양경계 획정의 기점으로 사용해 동중국해에서 도리시마와 단조군도를 기점으로 삼겠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항할 명분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우리로서는 한국령 독도와 일본령 도리시마 및 단조군도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논리를 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우리 입장까지 살펴 그들의 주장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없지 않겠는가. 머잖아 불거질 양국 간 갈등요소에 충분히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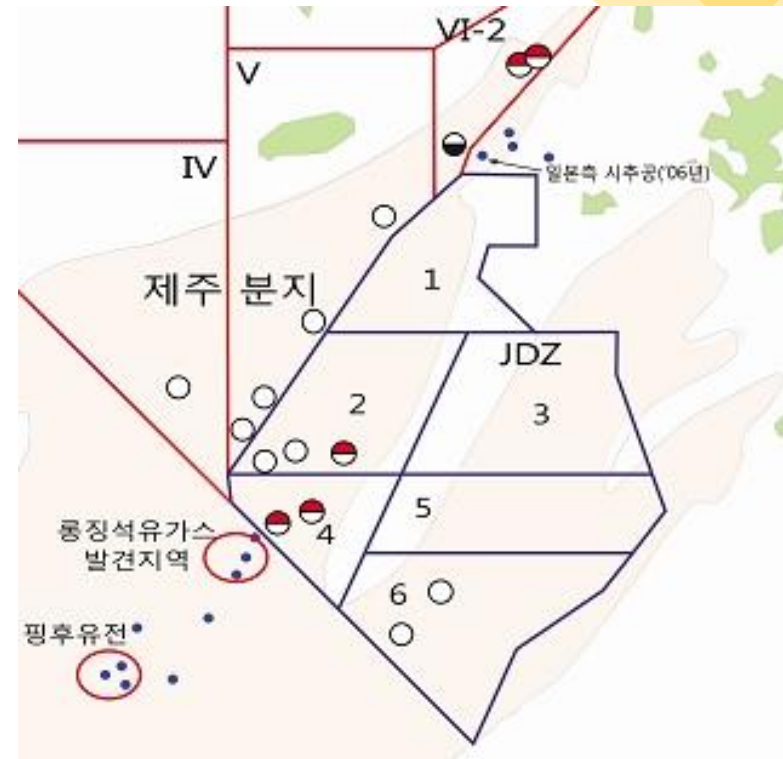
<김찬규, "[시론] 석유자원, 먼저 가까이서 찾아라"  
(세계일보, 2008. 5. 25)>

일본이 협정의 종기에 맞춰 당연히 협정을 종료시킬까.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협정 체제가 갖는 현상유지의 이점을 고려해봐야 한다. 중국은 그간 협정 체제에 반대해 왔으나 공동개발구역 내에서 단독탐사·개발을 실제 수행했다는 보고는 알려진 바 없다. 이는 협정 체제가 사실상 억지효과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일공동개발구역 내 중국의 침투가능성은 일본에게 결코 반가울 리 없다. 중국을 포함한 3국간 협상체제가 구축되면 일본이 원하는 중간선에 따른 경계획정은 더욱 요원해진다. 한중의 강제분쟁해결절차 배제선언으로 인해 국제재판을 통한 경계획정도 곤란하다. 당분간 협정 체제를 유지함이 한국의 독자적 자원활동을 견제하는 데도 용이하다. 자원매장의 불확실성과 주변국의 견제를 무릅쓰고 일본이 무작정 일방적 개발을 감행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일본에게는 협정을 단번에 종료시키기보다 한국과의 협상에서 자국에 유리한 경계획정이나 공동개발체제의 수립을 도모하면서 현 상태를 끌고 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이상을 고려하면 한일 협력체제의 존속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한국은 일본의 현상유지의 이익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김민철, "2028년 이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제는 지속 가능할까?" 국제법 현안 Brief (2019. 10. 22.)>

## 동중국해 해양경계획정 논리의 개발과 정치화

- 단조군도/토리시마 기점 문제
  - 독도기점론과의 연계
- 400해리 미만 수역에서 200해리 이원 대륙붕 주장
- EEZ/대륙붕 경계획정의 이원적 접근법
- 기타 관련사정 주장 강화 요소



대륙붕 광구현황 및 시추실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2014. 9.) 중)



**Thank you**